제29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〔2023. 4. 18.(화) 10:00〕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2023. 4. 18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 · 재무위원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3년 4월 18일 전문위원 장 석 현

# 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: 2023 - 44

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
다. 제출일자: 2023년 4월 6일

라. 회부일자: 2023년 4월 10일

# 2. 개정이유

현행 상위법인 「지속가능발전법」폐지 및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이 재제정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계획에 관한 핵심 내용 및 추진 절차 변경 등의 조례 위임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(안 제1조)
- 나.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(안 제3조)
- 다.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・이행 (안 제4조)
- 라. 추진상황의 점검 (안 제5조)
- 마.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(안 제6조)
- 바.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(안 제9조, 제10조)

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)

다. 합 의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3. 2. 8. ~ 2023. 2. 28.) 결과: 의견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3) 규제사전심사 결과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의견 일부수용

- 제10조(위원회 구성 등) 개선의견에 대한 사항은 제19조(그 밖의 사항)에 관련 내용이 있으므로 일부 수용하여, 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 고려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 취지

○ 기존 상위법 「지속가능발전법」이 폐지되고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 (2022. 1. 4. 제정, 2022. 7. 5. 시행)이 다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취지에 맞게 조례 위임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# 나. 주요 내용

○ 안 제1조는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함

(현행)「지속가능발전법」 → (개정)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

- 안 제2조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의 정비 및 구민 이해도 증대를 위한 노력 등 지속가능발전이 구정 운영의 핵심 원칙 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
- 안 제3조 ~ 제4조는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년 단위로 「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」을 수립・시행하고, 그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・정비하도록 하였으며 원활한 기본전략 추진을 위해 「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」을 5년마다 수립・이행하도록 함
  - (현행)「기본계획 5년 수립」 → (개정)「기본전략 20년 수립」
  - (현행)「이행계획 2년 수립」 → (개정)「추진계획 5년 수립」
- 안 제5조 ~ 제6조는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·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위원회 권한 강화 규정을 신설함
- 안 제7조 ~ 제8조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는 정도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・보급하고,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음
- 안 제9조 ~ 제15조는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」 설치 및 기능, 위원회 구성, 위원장의 직무, 회의 소집과 출석 및 의결 정족수 등 위원회 구성・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
- 안 제18조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가능 발전 관련 교육과 간담회 개최 등 위원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함
- 안 제20조는 기본전략, 추진계획,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,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・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

### 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의 제정·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맞게 기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」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.
- 지속가능발전은 1992년 리우선언<sup>1)</sup>으로 구체화된 발전담론으로, 미래세대의 생존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고 「환경보전-경제성장-사회발전」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며, 우리나라는 2000년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처음 발족되었음
-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의 기회를 갖는 지속가능발전 이념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으로 파생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현 시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며,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

<sup>1)</sup> 리우선언

<sup>- 1992</sup>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 정상 회의에서 채택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담은 선언문으로,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음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 수당(안 제9조)
-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에 따른 연구용역비(안 제20조)
- 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에 따른 행사운영비(안 제21조)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"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"에 해당됨
- 예상 소요 비용: 약 35,000천원
  - 위원회 참석수당(매년): 약 12,000천원(20명\*100,000원\*6회)
  - 지속가능발전 구민 교육: 3,000천원(3,000,000원\*1회)
  -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용역: 20,000천원(20,000,000원\*1식)

# 4. 작성자: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과장 조은영

(담당: 행정7급 김여훈 / ☎ 2600-6193)

### 붙임2

### 관계법령

## □ 지속가능발전 기본법

제7조(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)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 능발전 국가기본전략(이하 "국가기본전략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.

-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지속가능발전의 현황,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
- 2.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
- 3.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·사회·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- 4.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, 포용적 사회 구현, 생태·환경 및 기후위기 대
- 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
- 5.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
- 6.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
- 7.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 가능발전 국가위원회(이하 "국가위원회"라 한다)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.
- ⑤ 정부는 경제적·사회적·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.
- 1.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
- 2.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
- 3.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
- 4.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

- 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(이하 "지방기본전략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국가기본전략"은 "지방기본전략"으로, "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"는 "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"로, "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"는 "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"로 본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·사회적·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.
- 1. 국가기본전략
- 2.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
- 3.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(이하 "지방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제9조(추진계획의 수립·이행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(이하 "중앙추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이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 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(이하 "지방추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・이행하여야 한다.
 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

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- 제10조(추진계획의 협의·조정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추진계획이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·도의 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·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는 그 협의·조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 - ② 시·도지사는 시·군·구(자치구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의 지방추진 계획이 그 시·도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·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·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 - ③ 시·군·구의 장은 시·도의 지방추진계획이나 다른 시·군·구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·군·구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상호 협의·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·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제11조(추진상황의 점검)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  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·보완하여야 한다.
  -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.
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·보완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) ① 국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  - ② 지방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"관계 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은 그 의 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·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·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3조(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 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지속가 능발전의 기본원칙과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 록 하여야 한다.
- 제14조(법령 제·개정에 따른 통보 등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·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·장기 행정계획을 수립·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·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야 한다.
 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·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-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·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·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,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·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·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##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

- 제15조(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·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·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정한다.
- 제16조(지속가능발전 보고서)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 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(이하 "국가보고서"라 한다)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(公表)하여야 한다.
  -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(이하 "지방보고서"라 한다)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지방보

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

- 제17조(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)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 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.
- 제18조(국가위원회의 구성 등)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.
  -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,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·학계·산업계·교 육계·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.
  -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.
  -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-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.
  - 1. 지속가능발전 전략
  - 2.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
  - 3. 포용적 사회
  - 4. 생태·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
  - 5. 이해관계자 협력
  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
  -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.
  - ⑦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·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.
  - ⑧ 제1항·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위원회, 전문위원회,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·운영 및 자료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국가위원회의 기능)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
- 2. 중앙추진계획의 수립 · 변경에 관한 사항
- 3.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 · 조정에 관한 사항
- 4.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
- 5.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
- 6.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
- 의 통보에 관한 사항
- 7.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·보급 및 국가지속가능
- 성 평가에 관한 사항
- 8.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
- 9.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
- 10. 제2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
- 11. 제28조에 따른 교육 · 홍보 등에 관한 사항
- 12.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
- 13.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
- 14.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
- 제20조(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지방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시·군·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· 변경에 관한 사항
  - 2.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· 변경에 관한 사항
  - 3.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 · 조정에 관한 사항
  - 4.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
  - 5.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
  - 6.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
  - 7.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·보급 및 지방지속가능 성 평가에 관한 사항

- 8.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
- 9.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
- 10. 제28조에 따른 교육 · 홍보 등에 관한 사항
- 11.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
- 12.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
- 13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
-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.
-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·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제21조(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) ①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나 법인·단체 등의 장에게 그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- 제22조(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)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,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### 제5장 지속가능발전 시책

- 제23조(지속가능한 경제 성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·소비 및 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생산・소비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일 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

- 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, 사회적 책임성, 환경적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 원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이, 장애 여부, 출신지역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 ·임금·사회보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제도 및 금융제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·운영하고,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・식물의 서식지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・복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여야 한다.
-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·도로·항만·상하수도·녹지 등 사회기 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 야 한다.
- 제24조(포용적 사회 구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 및 불평등 심화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,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식량작물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를 통한 식량안보를 확보하여야 하며,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

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,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보편적 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,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시책을 수립・시행하여야한다.
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25조(생태·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, 물부족,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여야 하며, 에 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 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,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산성화, 해수면 상승 및 해양오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육상생태계의 보전·관리와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, 황폐화된 토지와 산림의 복원을 비롯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

시행하여야 한다.

- 제26조(이해관계자 협력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국가위원회와 지방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,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·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,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, 기술협력 및 표준화, 공동조사·연구 등의 활동에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제6장 보칙

- 제27조(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·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·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 -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·운영과 조사·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·운영할 수

있다.

-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·운영,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·방법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8조(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·홍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 가능발전에 관한 교육·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·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, 평생교육과 통합・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 는 사업자·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.
 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·연구 수행,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.
  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·방송·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·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.
  -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·방영하고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29조(국민 의견의 수렴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 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(이하 "숙의공론화장"이라 한다)을 마련할 수 있다.
  - ②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·투명성·포용성·대표성·책임성·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,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③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

-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, 그 반영 결과 등을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.
- 제30조(자료제출 등의 요구) ①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직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제31조(국제규범 대응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 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제도·정책에 관 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·조사·분석하여 관련 제도·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동향·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·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32조(국회 등 보고) ①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제1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가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지방추

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18708호, 2022. 1. 4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3조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폐지) 「지속가능발전법」을 폐지한다.

제3조(국가기본전략에 관한 경과조치) 종전의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라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으로 본다.

[시행일: 2022. 3. 25.] 제3조

제4조(국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지속가능발 전법」에 따라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로 본다.